
공공기관의 자율안전관리 촉진을 위한
'20년도 공공기관 안전활동 수준평가 계획

'20. 8.

목 차

I . 평가배경 및 경과	1
II . 평가목적 및 개요	2
III . '20년도 평가전략	3
IV . 세부평가 계획	4
V . 평가결과 심의 · 활용 및 협조요청	10

I. 평가배경 및 경과

1 평가배경

- 공공기관의 근원적인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평가체계 구축
 - 공공기관의 끊임없는 안전사고* 반복으로 국민적 우려가 확산됨에 따라, 공공기관의 안전경영 촉진을 위한 정부 대책** 발표
 - * KTX 강릉선 탈선('18.12.8.), 태안발전소 청년노동자 협착('18.12.10.) 등
 - ** '공공기관 작업장 안전강화 대책'(관계부처 합동, '19.3.19.), '공공기관 안전강화 종합 대책'(기획재정부, '19.3.28.)
 - 공공기관의 안전책임경영 이행을 위해 공공기관의 안전활동 수준을 정부 경영평가에 반영하는 안전중심 평가제도 추진*
 - * 공공기관의 안전활동 수준평가에 관한 고시(고용노동부 고시 제2019-47호, '19.9.23.)
 - ** 2019년 공공기관 경영평가 편람(기획재정부 공공기관 운영위원회, '19.10.)

2 평가경과

- 자율안전경영체제 확립을 위해 '19년 안전활동 수준평가 시행
 - 고용노동부 주관, 안전보건공단 수행의 평가체계 마련('19.9)
 - 정부 경영평가 대상 128개(공기업: 36개소, 준정부기관: 92개소)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P-D-C-A* 관점에서
 - * Plan(계획 수립) - Do(실행 및 운영) - Check(점검 및 시정조치) - Action(개선)
 - 안전보건체제, 안전보건활동 계획, 안전보건활동 수준, 안전보건활동 성과를 공공기관의 유형·특성별로 평가('20.1~2월)
 - 평가결과는 공공기관 경영평가, 점검·진단 등의 목적으로 관계부처(고용노동부 및 기획재정부)에서 활용('20.3)

▶ 공공기관의 안전관리 수준 파악 및 안전관리 방향성 제시

Ⅱ. 평가목적 및 개요

1 평가목적

- 공공기관 작업장에서 ‘안전’이 제1의 가치가 되어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를 조성하고 범국민적 안전문화 확산에 기여
- 공공기관이 안전경영체제를 자율적으로 구축하고 기관의 위험요인에 대해 지속적인 안전관리를 실시하여 안전수준 향상을 도모

2 평가개요

< 평가근거 >

- ❖ 공공기관의 안전활동 수준평가에 관한 고시(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24호)
- ❖ 2020년 공공기관 경영평가편람(기획재정부, '19.12.)

< 1 > 평가의의

- 공공기관 작업장의 안전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실시한 안전보건 활동 및 그 수준에 대한 평가(고용노동부)
- 공공기관의 안전활동 노력 등 안전 수준을 정부 경영평가에 반영(기획재정부)

< 2 > 평가수행

- 고용노동부(주관) - 안전보건공단(수행)의 평가 체계

< 3 > 평가내용

- P-D-C-A* 관점에서 안전보건경영체제, 안전보건관리, 안전보건활동, 안전보건성과 등 공공기관 유형·특성별 평가

* Plan(계획 수립) - Do(실행 및 운영) - Check(점검 및 시정조치) - Action(개선)

- 현장작동성평가('20.下) 및 본평가('21.上)로 구분, 현장의 안전활동 이행 및 기관의 안전체제 구축 평가

Ⅲ. '20년도 평가전략

1 전략체계

□ 공공기관 안전경영 정착을 위한 단계적 확대

비전

안전하고 건강한 공공일터 조성



목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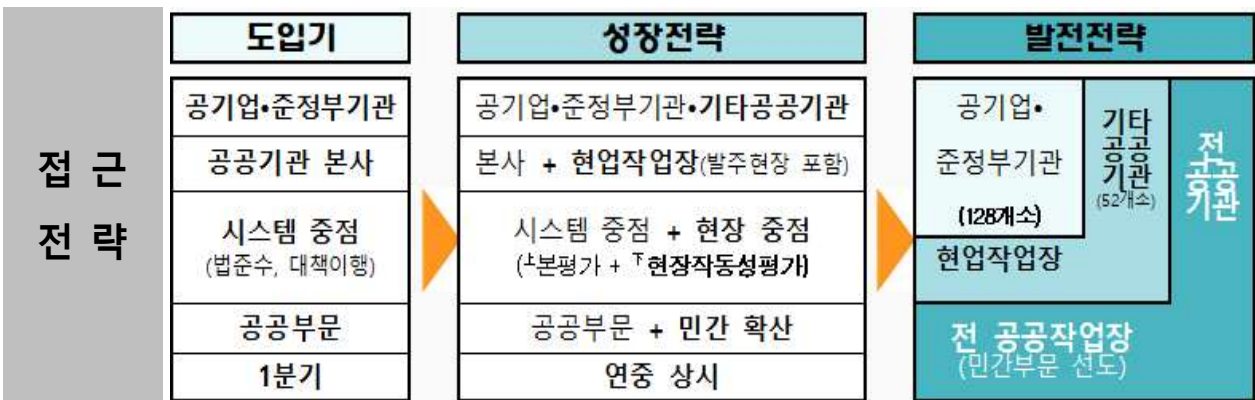
'22년까지 공공기관 산재 사망사고 절반 이상 감소

방침

안전 중심
경영 패러다임 전환

공공 작업장의
안전 활동 강화

전문성·신뢰성 기반의
평가품질 유지



2 추진방향

① 공공작업장에 대한 안전활동 평가 대상 및 범위 확대

▶ 평가 대상기관 확대, 현장 안전활동 평가 강화

② 지속적 안전수준 향상을 위한 평가지표 고도화

▶ 기관 특성별 유형 적용, 지표체계 개편, 신규 평가지표 개발

③ 안전활동 수준평가의 신뢰성 및 수용성 제고

▶ 공공기관 현황 실태조사, 평가결과 환류

IV. 세부 평가계획

1 평가대상

□ 공공기관 작업장에 대한 안전활동 평가 대상 및 범위 확대

- ('20년) '19년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중심의 평가에서 기타공공기관 까지 확대('19년: 128개소 → '20년: 180개소)

(단위: 개소)

계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
	I형	II형	기금관리형	위탁집행형	강소형	
180	10	26	13	40	39	52*

* 기타공공기관 중 연구실, 전시·관람시설 및 안전관리중점기관

□ 현장 안전활동 평가 강화('20년 신규)

- 공공기관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주요 직영사업소 및 발주공사 현장의 안전활동 평가 확대 추진(現: 본사중심 → 改: 현장까지 확대)
- 현장의 안전활동 작동 수준을 당해 연도에 평가 후, 시스템 및 현장활동 수준을 익년도 본평가 시 종합적으로 평가

('19년) 안전체제 중심평가 공기업·준정부기관 128개소	➔	(20.下) 현장작동성평가(현장평가) → (21.上) 본평가(종합평가) 공기업·준정부·기타공공기관 180개소, 발주현장 등
-------------------------------------	---	---

※ 19년도 실적평가 시 안전관리중점기관 31개소 시범 실시

□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128개소)

유형		공공기관명
공기업 (36개)	공기업 I (10개)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공기업 II (26개)	강원랜드(주), 그랜드코리아레저(주), 대한석탄공사, 부산항만공사, 여수광양항만공사, 울산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주식회사 에스알, 주택도시보증공사, (주)한국가스기술공사, 한국감정원,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남동발전(주), 한국남부발전(주), 한국동서발전(주), 한국마사회,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한국서부발전(주),

유형	공공기관명
	한국수력원자력(주), 한국전력기술(주), 한국조폐공사, 한국중부발전(주), 한전KDN(주), 한전KPS(주), 해양환경공단
기금관리형 (13개)	공무원연금공단, 국민연금공단, 국민체육진흥공단, 근로복지공단, 기술보증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신용보증기금, 예금보험공사, 중소기업진흥공단,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원자력환경공단,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위탁집행형 (40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립공원공단, 국립생태원, 국민건강보험공단,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도로교통공단, 사회보장정보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우체국금융개발원, 우체국물류지원단, 축산물품질평가원,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고용정보원, 한국관광공사,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국제협력단,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석유관리원, 한국소비자원, 한국승강기안전공단,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연구재단,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한국장학재단,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전력거래소, 한국정보화진흥원,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한국환경공단,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강소형 (39개)	국제방송교류재단,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농림수산물식품교육문화정보원,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농업기술실용화재단, 독립기념관, 시청자미디어재단, 아시아문화원,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재단법인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창업진흥원, 한국건강증진개발원, 한국과학창의재단, 한국광해관리공단,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기상산업기술원,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한국디자인진흥원,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보육진흥원, 한국산림복지진흥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소방산업기술원, 한국수산자원공단,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한국언론진흥재단,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한국우편사업진흥원, 한국임업진흥원, 한국재정정보원,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특허전략개발원, 한국해양수산연수원,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 신규 지정기관 평가 제외: 한국건강가정진흥원(여가부), 한국수목원관리원(산림원) 등
 ※ 안전보건공단은 평가수행 기관임을 감안하여 결측 처리

○ 기타공공기관(52개소)

유형	공공기관명
연구실 (38개소)	(필수) 국방과학연구소,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과학기술원,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한국전기연구원, 국가핵융합연구소, 세계김치연구소, 안전성평가연구소, 울산과학기술원, 한국뇌연구원, 한국세라믹기술원,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한국한의학연구원 기초과학연구원,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기술교육대학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화학연구원, 광주과학기술원, 극지연구소, 나노종합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재료연구소,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기계연구원, 한국나노기술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식품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천문연구원,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전시 및 관람시설 (9개소)	태권도진흥재단, (재)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국립광주과학관,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국립대구과학관, 국립부산과학관, 국립해양박물관, 국립해양생물자원관, 예술의전당
안전관리중점기관 (5개소)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중소기업유통센터, 중소기업은행, 코레일유통(주), 한국산업은행

※ 공공기관 안전등급제 대상과 연계하여 수행

2

평가시기 및 방법

□ 현장 안전활동 평가 강화에 따른 평가시기 이원화

- 안전경영체제 구축에 대한 **본평가**(본사방문)와 공공 작업장의 안전 활동에 대한 **현장작동성평가**(현장방문)로 **구분·평가***(기관별 1~2일)

* ① 현장작동성평가 → ② 본평가 → ③ 최종 평가결과 결정

※ 안전활동 수준평가의 **객관성, 투명성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해 학계, 고용노동부 및 안전보건공단 전문가 등으로 **평가반 구성·운영**(현장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

- **현장작동성평가('20.下)**: 공공기관의 안전체제 및 계획에 따라 **현장에서 실시하는 안전보건 조치 및 실행 등 이행수준을 평가**

구분	'20.8월~	'20.9월~	'20.10월
평가 그룹	공기업	준정부기관 (위탁집행형, 기금관리형) 건설공사 발주현장	강소형

※ **(대상)** '공공기관의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 제5조(안전관리 중점기관의 지정 등) 1항 1~5에 해당하는 기관으로써, 위험도를 고려하여 실무위원회에서 결정한 기관(**69개 기관 98개소 현장**)

- **본평가('21.上)**: 공공기관의 안전경영체제, 계획 수립 등의 적정성 여부 및 사회적 안전가치 실현 평가

구분	'21.1월	'21.2월
평가 그룹	공기업 준정부기관	강소형 기타공공기관

※ **(대상)** 평가대상 전 기관(**180개 기관**)

□ 평가 프로세스



□ 기관별 특성을 고려한 지표 유형 적용

- (유형) 공공기관 작업장의 특성·위험도를 고려, 기간산업형 및 서비스집중형의 2개 유형으로 구분·적용

- 기간산업형: 에너지(전기, 가스 등)의 생산 및 공급, 도로·공항·항만 건설·유지관리업무 등 사고발생 위험이 높은 기관
- 서비스집중형: 금융, 보험, 보증 등의 행정서비스, 위락·공원시설 관리서비스 및 자격·검정·검사·감독·시험 등 기술서비스 중심 업무수행 기관 또는 기간산업형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기관

※ 공공기관 실태조사('20.6월) 결과를 토대로 본사 및 지사·직영사업소 등의 분류를 체계화하고 실무위원회를 통해 확정('20.7.20.)

- (발주) 공공기관 발주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근로자 보호를 위한 안전활동 수준을 평가(해당 시 적용)

* 총 공사금액 50억 이상의 건설공사(본사 및 지사 발주, '19.6.1. 이후 착공 기준)

□ 평가지표 체계 개편

- P-D-C-A 기반의 체계를 유지하되, 평가지표 통합 및 재정렬

- '19년도 평가 시 높은 가중치를 부여한 체제 및 계획 분야를 통합* 하여 기관유형별 가중치 차등 적용

* 안전보건체제 + 안전보건활동계획 → 안전보건경영체제

- '20년도 현장에 대한 평가를 강화하기 위해 안전보건활동수준 분야를 관리적 분야와 실행 분야로 세분화*하고 가중치 상향

* 안전보건활동수준 → 안전보건관리(공통관리 + 수급업체관리) + 안전보건활동(현장 + 발주 안전보건관리)

- 지표 체계 개편안

- 평가분야 > 평가영역 > 평가항목 > 세부 평가내용으로 구성

평가지표 개편 요약

< '19년도 >

4개 분야*, 7개 영역

* 체제, 계획, 수준, 성과

4개 유형

[종합, 발주, 수급, 기본]

▣ 건설발주, 수급업체 유무에 따라 적용

< '20년도 >

4개 분야*, 5개 영역

* 체제, 관리, 활동, 성과

2개 유형

[기간산업, 서비스산업]

▣ 공공기관의 특성에 따라 적용

< 평가지표 개편 요약표 >

< '19년도 >

분야	영역
㉠ 안전보건체제	
㉡ 안전보건 활동계획	
㉢ 안전보건활동 수준[4개영역]	㉢-1 [공동 안전보건관리]
	㉢-3 [수급업체 안전보건관리]
	㉢-4 [현장 안전보건관리]
	㉢-2 [발주 안전보건관리]
㉣ 안전보건 활동성과	

< '20년도 >

분야	영역	평가 종류	
		현장평가	본평가
㉠ 안전보건 경영체제		-	○
		-	○
㉡ 안전보건관리		○	○
		○	○
㉢ 안전보건활동 [2개영역]	㉢-1 [작업장]	○	○
	㉢-2 [건설 발주현장]	○	○
㉣ 안전보건성과		-	○

※ 현장평가('20.下), 본평가('21.上) 실시

○ 분야별 지표

- (안전보건경영체제) ^現안전보건체제 · 안전보건활동계획 분야 6개 항목 → ^改안전보건경영체제 5개 항목으로 개편

< '19년도 >

분야	항목
안전보건 체제	안전보건경영방침 수립 및 활동 수준
	안전보건경영체계 구축수준
	안전보건경영 조직 활동 수준 (중점기관)
	안전보건경영 투자수준
안전보건 활동계획	안전관리규정 작성
	안전기본계획 수립

< '20년도 >

분야	항목
안전보건 경영체제	최고경영자의 안전보건경영 리더십
	안전보건경영체계 구축 및 역량수준
	안전보건경영 투자
	안전관련 규정 및 절차·지침
	안전관리 목표 및 안전기본계획 수립

- (안전보건관리) ^現안전보건활동수준 분야, 2개 영역(공통, 수급) → ^改안전보건관리로 통합, 유형별 7~8개 항목으로 축소

< '19년도 >			< '20년도 >	
분야	영역	항목	분야	항목
안전보건 활동수준	공통 안전보건관리	14개 항목	안전보건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간산업형 : 8개 항목 • 서비스집중형 : 7개 항목
	발주 안전보건관리			
	수급업체 안전보건관리			
	현장 안전보건관리			

- (안전보건활동) ^現안전보건활동수준 분야, 2개 영역(공통, 수급) → ^改안전보건활동 2개 영역으로 통합

- 유형별 4~7개 항목으로 차등 적용, 발주현장 6개 항목으로 확대

< '19년도 >			< '20년도 >	
분야	영역	항목	분야	영역
안전보건 활동수준	공통 안전보건관리	6개 항목	안전보건 활동	작업장 안전보건활동 • 기간산업형 : 7개 항목 • 서비스집중형 : 4개 항목
	발주 안전보건관리			
	수급업체 안전보건관리	7개 항목		발주현장 안전보건활동(해당 시) • 6개 항목
	현장 안전보건관리			

- (안전보건성과) ^現안전보건활동성과 분야, 2개 항목 → ^改안전보건성과 3개 항목으로 확대

< '19년도 >		< '20년도 >	
분야	항목	분야	항목
안전보건 활동성과	성과측정 및 시정조치	안전보건 성과	안전보건경영 핵심 성과측정
	산업재해 감축 노력도		안전문화 확산
			사망사고 감소 성과

V. 평가결과 심의·활용 및 협조요청

1 평가결과 심의 등

< 1 > 실무 평가위원회

- 평가단계별 실무 평가위원회 구성·운영*, 평가의 공정성 등 확보
 - * 당연직(고용노동부·안전보건공단) 및 위촉직(학계 등) 위원 → 현장작동성평가 대상 선정, 평가결과 이의검토 등

< 2 > 평가 심의위원회

- 공공기관의 안전활동 수준평가 결과 등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평가심의위원회' 구성·운영*
 - * 위원장(고용노동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 10인 이내 당연직(고용노동부·안전보건공단) 및 위촉직(학계 등) 위원 → 평가결과 심의, 그 밖에 평가와 관련한 사항

2 평가결과 활용

- 안전활동 수준평가 결과는 정부 경영평가의 참고자료로 활용토록 경영평가단 제공*, 공공기관의 안전·보건관리 수준 향상 기여
 - * 안전활동 수준평가 결과는 공공기관 경영평가 편람상 「경영관리 범주」-「사회적 가치 구현」-「안전과 환경」 평가 시 참고자료로 활용(기획재정부 송부)
 - ※ 안전활동 수준평가 결과는 평가대상 공공기관의 안전경영 기초자료로 활용토록 해당 기관 송부

3 협조요청

- 평가장소 및 증빙자료 등 사전준비, 경영진·노동자 등 면담지원, 현장평가 시 현장안내 등
 - ※ 평가관련 증빙자료는 가급적 전산파일(hwp, pdf 등) 또는 내부 전산망(ERP, EHS 시스템 등)을 이용한 on-line 방식 증빙(제본 등 종이문서 또는 별도자료 작성 지양)
- 불필요한 부대지원(식사·선물·향응·의전 등) 절대금지
 - ※ 평가 중 청렴도 등 제고를 위해 고용노동부(산업안전과)·안전보건공단(공공기관평가실)에서 모니터링 실시(예정)
- 기타: 코로나 19 확산 추이를 고려, 평가시기·방법 등은 변동 될 수 있음

참고 1 20년도 공공기관 안전활동 수준평가 지표

< 1 > 평가지표 비교표

분야	분야별 배 점	'19년 평가 항목	'20년 평가 항목(기간산업협)	분야별 배 점	분야
㉠ 안전보건체제	250	① 최고경영자의 안전보건경영방침 수립 및 활동 수준 ② 안전보건경영체제 구축 수준 ③ [안전관리 중점기관] 안전보건경영 조직 활동 수준 ④ 안전보건경영 투자 수준	1. 최고경영자의 안전보건경영 리더십 2. 안전보건경영체제 구축 및 역량 3. 안전보건경영 투자 4. 안전관리 규정 및 절차-지침 5. 안전관리 목표 및 안전기본계획 수립	250	㉠ 안전보건 경영체제
㉡ 안전보건활동 계획	100	① 안전관리규정 작성 ② 안전기본계획 수립			
㉢ 안전보건활동 수준	500	㉢-1 [공통 안전보건관리] ① 일반 작업안전 관리 ② 노동자 건강 유지·증진 활동 수준 ③ 사업장 시설 점검기준 수립 및 이행 ④ 위험성평가 ⑤ 안전보건교육 ⑥ 노동자 안전보건활동 참여수준 ⑦ 위험작업 안전관리(안전작업허가제도) ⑧ 재해조사 및 재발방지 ⑨ 비상시 대비 및 대응 ⑩ 대국민 이용시설 안전관리 체계 ⑪ 안전문화 확산 노력도	1. 근로자 건강 유지·증진 2. 위험성평가 3. 안전보건교육 4. 관리자 및 근로자 등의 안전보건활동 참여 5. 비상시 대비 및 대응 6. 재해조사 및 재발방지	250	㉢ 안전보건관리
		㉢-3 [수급업체 안전보건관리] ① 도급절차 및 수급업체 안전보건관리 계획 수립 ② 수급업체 작업장 산업재해 예방조치 실행 수준 ③ 안전보건 교육 등 인프라 지원	7. 적격 수급업체 선정 및 수급업체 산업재해 예방조치 8. 수급업체 안전보건교육 등 인프라 지원		
		㉢-4 [현장 안전보건관리] ① 일반 현장 안전보건관리 ② 기계·기구·설비에 의한 위험방지 조치 ③ 전기·기계·기구로 인한 위험방지 ④ 추락·낙하·붕괴 등 시설물 위험방지 조치 ⑤ 화학물질에 의한 화재·폭발 및 누출 위험방지 조치 ⑥ 화학물질 중독 및 질식사고 예방 활동 수준 ⑦ 작업환경 관리 수준	[㉢-1 작업장] 1.1. 기본 안전보건관리 1.2. 기계·기구·설비에 의한 위험방지 조치 1.3. 전기·기계·기구로 인한 위험방지 조치 1.4. 추락·낙하 등 위험방지 조치 1.5. 화재·폭발 및 누출 위험방지 조치 1.6. 화학물질 중독 및 질식사고 예방활동 수준 1.7. 위험작업 및 상황 안전관리		
		㉢-2 [발주 안전보건관리] ① 발주 계획 단계의 안전보건 확보(50억 원 이상 공사) ② 발주자의 안전보건조치 준수(50억 원 이상 공사) ③ 시공사 선정 시 안전보건관리 역량 평가 ④ 공사 안전보건감독 계획 및 수행 ⑤ 건설현장 안전보건 환경 조성	[㉢-2 건설공사 발주현장] 2.1. 계획단계의 발주자 안전보건활동 2.2. 설계단계의 발주자 안전보건활동 2.3. 시공단계의 발주자 안전보건활동 2.4. 안전보건조정자 활동 및 조치 2.5. 발주자의 시공사 안전보건활동 관리 2.6. 건설공사 발주현장 안전보건환경 조성	300	㉢ 안전보건활동
㉣ 안전보건활동 성과	150	① 성과측정 및 시정조치 ② 산업재해 감축 노력도	1. 안전보건경영 핵심 성과측정 2. 안전문화 확산 3. 사망사고 감소 성과	200	㉣ 안전보건성과
합 계	1,000			1,000	합 계

< 2 > 평가지표 총괄표

○ 기간산업형

분 야	평가 항목	배점(점)		지표적용(개)	
		①	②	본평가	현장 작동성
	합 계	1,000	1,000	29	21
	소 계	250	250	5	-
㉠ 안전보건 경영체제 (5항목)	1. 최고경영자의 안전보건경영 리더십	60	60	○	×
	2. 안전보건경영체제 구축 및 역량	60	60	○	×
	3. 안전보건경영 투자	30	30	○	×
	4. 안전관리 규정 및 절차-지침	50	50	○	×
	5. 안전관리 목표 및 안전기본계획 수립	50	50	○	×
	소 계	250	250	8	8
㉡ 안전보건관리 (8항목)	1. 근로자 건강 유지·증진	30	30	○	○
	2. 위험성평가	40	40	○	○
	3. 안전보건교육	20	20	○	○
	4. 관리자 및 근로자 등의 안전보건활동 참여	40	40	○	○
	5. 비상시 대비 및 대응	20	20	○	○
	6. 재해조사 및 재발방지	20	20	○	○
	7. 적격 수급업체 선정 및 수급업체 산업재해 예방 조치	40	40	○	○
	8. 수급업체 안전보건교육 등 인프라 지원	40	40	○	○
	소 계	300	300	13	13
㉢ 안전보건활동 (13항목)	[㉢-1 작업장]	150	300	7	7
	1.1. 기본 안전보건관리	20	40	○	○
	1.2. 기계·기구·설비에 의한 위험방지 조치	20	40	○	○
	1.3. 전기기계·기구로 인한 위험방지 조치	20	40	○	○
	1.4. 추락·낙하 등 위험방지 조치	25	50	○	○
	1.5. 화재·폭발 및 누출 위험방지 조치	25	50	○	○
	1.6. 화학물질 중독 및 질식사고 예방활동 수준	20	40	○	○
	1.7. 위험작업 및 상황 안전관리	20	40	○	○
	[㉢-2 건설공사 발주현장]	150	-	6	6
	2.1. 계획단계의 발주자 안전보건활동	20	-	○	○
	2.2. 설계단계의 발주자 안전보건활동	20	-	○	○
	2.3. 시공단계의 발주자 안전보건활동	20	-	○	○
	2.4. 안전보건조정자 활동 및 조치	30	-	○	○
	2.5. 발주자의 시공사 안전보건활동 관리	40	-	○	○
2.6. 건설공사 발주현장 안전보건환경 조성	20	-	○	○	
	소 계	200	200	3	-
㉣ 안전보건성과 (3항목)	1. 안전보건경영 핵심 성과측정	40	40	○	×
	2. 안전문화 확산	80	80	○	×
	3. 사망사고 감소 성과	80	80	○	×

① 건설공사 발주현장 평가를 받는 경우

② 건설공사 발주현장 평가를 받지 않는 경우

○ 서비스집중형

분 야	평가 항목	배점(점)		적용지표(개)	
		①	②	본평가	현장 작동성
	합 계	1,000	1,000	25	17
④ 안전보건 경영체제 (5항목)	소 계	300	300	5	-
	1. 최고경영자의 안전보건경영 리더십	80	80	○	×
	2. 안전보건경영체제 구축 및 역량	80	80	○	×
	3. 안전보건경영 투자	40	40	○	×
	4. 안전관리 규정 및 절차·지침	50	50	○	×
	5. 안전관리 목표 및 안전기본계획 수립	50	50	○	×
⑤ 안전보건관리 (7항목)	소 계	250	250	7	7
	1. 근로자 건강 유지·증진	30	30	○	○
	2. 고객응대 근로자 보호 및 건강증진활동	30	30	○	○
	3. 위험성평가	40	40	○	○
	4. 안전보건 교육·인식·활동참여	40	40	○	○
	5. 비상상황 대비·대응 및 재해조사	30	30	○	○
	6. 적격 수급업체 선정 및 수급업체 산업재해 예방 조치	40	40	○	○
	7. 수급업체 안전보건교육 등 인프라 지원	40	40	○	○
⑥ 안전보건활동 (10항목)	소 계	200	200	10	10
	[◎-1 작업장]	100	200	4	4
	1.1. 기본 안전보건관리	20	40	○	○
	1.2. 기계·전기 설비 및 건축물 등의 위험방지 조치	30	60	○	○
	1.3. 화재 및 질식 등의 위험방지 조치	30	60	○	○
	1.4. 위험작업 및 상황 안전관리	20	40	○	○
	[◎-2 건설공사 발주현장]	100	-	6	6
	2.1. 계획단계의 발주자 안전보건활동	10	-	○	○
	2.2. 설계단계의 발주자 안전보건활동	10	-	○	○
	2.3. 시공단계의 발주자 안전보건활동	10	-	○	○
	2.4. 안전보건조정자 활동 및 조치	20	-	○	○
	2.5. 발주자의 시공사 안전보건활동 관리	35	-	○	○
2.6. 건설공사 발주현장 안전보건환경 조성	15	-	○	○	
⑦ 안전보건성과 (3항목)	소 계	250	250	3	-
	1. 안전보건경영 핵심 성과측정	50	50	○	×
	2. 안전문화 확산	100	100	○	×
	2. 사망사고 감소 성과	100	100	○	×

① 건설공사 발주현장 평가를 받는 경우

② 건설공사 발주현장 평가를 받지 않는 경우

< 3 > 분야별 평가지표

기간산업형

㉠ 안전보건경영체제

- 공공기관의 최고경영자의 안전보건경영 리더십 및 안전보건경영 체제·역량, 안전투자, 안전관리규정, 안전기본계획 등으로 구성

분 야	배점	평가 항목	세부 평가내용
㉠ 안전보건 경영체제 (Safety&Health Management System) • 5개 항목	60	A.1. 최고경영자의 안전보건경영 리더십	1. 최고경영자의 리더십과 안전경영 실천의지 2. 안전보건경영방침 수립 및 공유 3. 최고경영자의 안전보건활동 참여
	60	A.2. 안전보건경영체제 구축 및 역량	1. 안전관리조직의 구성 및 권한 2. 안전관리조직 역량과 구성원의 전문성 향상 3. 안전경영위원회 및 안전근로협의체[안전관리 중점 기관 해당],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 4. 안전보건경영시스템 구축[안전관리 중점기관]
	30	A.3. 안전보건경영 투자	1. 안전보건 예산 편성 2. 안전보건 예산 집행
	50	A.4. 안전관리 규정 및 절차·지침	1. 안전관리규정의 구성, 제·개정 절차 및 최신화 2. 안전관련 절차서·지침 구성, 제·개정절차 및 최신화
	50	A.5. 안전관리 목표 및 안전기본계획 수립	1. 안전보건방침과 안전기본계획의 목표 및 전략 수립 2. 안전기본계획 구성내용 및 이행수준

㉔ 안전보건관리

- 근로자의 건강 유지·증진, 위험성평가, 교육, 안전보건활동 참여, 비상시 대비, 재해조사, 수급업체 산업재해 예방, 수급업체 인프라 지원 등으로 구성

분 야	배점	평가 항목	세부 평가내용
㉔ 안전보건관리 (Safety&Health Administration) • 8개 항목	30	B.1. 근로자 건강 유지·증진	1. 건강진단 실시·결과·사후관리 2. 작업환경측정 실시계획의 수립, 측정결과 고위험 공정 등의 작업환경개선 3. 고객응대 근로자 보호조치와 근로자 건강증진활동 계획 수립·실행 4.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조치
	40	B.2. 위험성평가	1. 위험성평가 지침·계획 2. 위험성평가 추진 활동 3. 위험성평가 결과 활용
	20	B.3. 안전보건교육	1. 연간 안전보건교육 계획 수립 2. 안전 관련법령 및 지침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실시 3. 안전보건교육 관리 및 지원
	40	B.4. 관리자 및 근로자 등의 안전보건활동 참여	1. 관리자 안전보건 인식과 참여수준 2. 근로자 안전보건 인식과 참여수준 3. 안전보건 신고·제안·포상제도 운영
	20	B.5. 비상시 대비 및 대응	1. 비상시 대비·대응 관련 지침, 사고시나리오·비상조치계획 2. 비상시 대비·대응 교육 및 훈련 3. 비상시 대비·대응 관련 시설·장비 관리
	20	B.6. 재해조사 및 재발방지	1. 재해(산업재해 및 안전사고) 원인조사 지침 2. 재해조사 및 동종 재해 재발방지를 위한 노력 3. 아차사고(Near Miss) 발굴 및 개선 노력
	40	B.7. 적격 수급업체 선정 및 수급업체 산업재해 예방 조치	1. 도급 계획의 수립·검토 및 수급업체 선정 시 안전수준평가 기준·방법 등 2. 도급사업의 산업재해 예방조치 계획·실행
	40	B.8. 수급업체 안전보건교육 등 인프라 지원	1. 관계수급인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지원·실시확인 2. 관계수급인에 대한 위생시설 지원 수준 3. 수급인에 대한 안전보건정보 제공 및 이행 확인

㉔ 안전보건활동

○ 안전보건활동은 작업장, 건설공사 발주현장 분야로 구성

㉔-1. 작업장

분 야	배점	평가 항목	세부 평가내용
㉔ 안전보건활동 (Safety&Health Activity) • 13개 항목	【㉔-1. 작업장】		
	20 (40)	C.1.1. 기본 안전보건관리	1. 작업장 통로 확보 및 정리정돈, 적정 조도확보, 출입문 및 비상구 등의 유지·관리 2. 안전·보건표지 부착, 화학물질 경고표지 부착, MSDS 게시 등 관리 3. 작업근로자 개인보호구 지급 및 착용
	20 (40)	C.1.2. 기계·기구·설비에 의한 위험 방지 조치	1. 기계·기구·설비에 대한 위험방지조치 2. 기계·기구·설비에 대한 법정검사 실시 및 유지관리 3. 기계·기구·설비에 대한 정비·점검·청소 등의 작업 시, 불시가동에 의한 위험방지조치
	20 (40)	C.1.3. 전기기계·기구에 의한 위험 방지 조치	1. 전기기계·기구·설비·배선 등에 의한 위험방지 조치 2. 전로 및 근접 작업 등 전기작업에 따른 위험방지 조치
	25 (50)	C.1.4. 추락·낙하 등 위험방지 조치	1. 작업장소 및 통로 등에서의 추락 및 낙하 위험 방지조치 2. 구축물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설비 등의 붕괴·도괴 등 위험 방지조치
	25 (50)	C.1.5. 화재·폭발 및 누출 위험방지 조치	1. 위험물, 유해화학물질, 가연성물질 등의 화재·폭발·누출예방 조치 2. 인화성 액체·가스 등 제조·취급·저장설비 지역의 폭발 위험장소 설정 및 적정 기계기구 선정 구분
	20 (40)	C.1.6. 화학물질 중독 및 질식사고 예방활동 수준	1. 화학물질 중독사고 예방을 위한 작업환경 개선 시설 및 조치 2. 질식위험 작업·공간에 대한 안전관리
	20 (40)	C.1.7. 위험 작업 및 상황 안전관리	1. 주요 고위험 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제도 운영 2. 유해위험작업의 작업계획서 작성 및 관리감독 3. 작업중지 요청제 운영

※ 괄호 안 배점은 건설공사 발주현장 지표 미적용 기관의 배점

㉔-2. 건설공사 발주현장

분야	배점	평가 항목	세부 평가내용
㉔ 안전보건활동 (Safety&Health Activity) • 13개 항목	【㉔-2. 건설공사 발주현장】		
	20	C.2.1. 계획단계의 발주자 안전보건활동	1. 중점관리 유해·위험요인 및 위험성 감소대책 발굴수준 2. 기본안전보건대장 내용의 적정성 및 관리
	20	C.2.2. 설계단계의 발주자 안전보건활동	1. 설계자의 위험성평가 지원·검토 및 설계반영 수준 2. 설계안전보건대장 내용의 적정성 및 관리
	20	C.2.3. 시공단계의 발주자 안전보건활동	1. 시공자의 설계안전보건대장 이행계획 지원·검토 및 확인 수준 2. 공사안전보건대장 내용의 적정성 및 관리
	30	C.2.4. 안전보건조정자 활동 및 조치	1. 안전보건조정자 배치, 업무 계획 및 수행 체계 2. 안전보건조정자 활동 및 결과 조치
	40	C.2.5. 발주자의 시공자 안전보건활동 관리	1. 발주자 안전보건관리 업무체계 및 안전보건역량강화 2. 시공자의 위험성평가에 따른 발주자의 이행 점검 및 조치 3. 건설공사 발주현장의 안전보건조치 수준
	20	C.2.6. 건설공사 발주현장 안전보건환경 조성	1. 공법변경, 공사기간 단축 및 연장, 설계변경 요청 시 처리 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

㉕ 안전보건성과[공통]

- 안전보건성과는 안전보건경영 핵심 성과측정 및 안전문화 확산, 사망사고 감소성적으로 구성

분야	배점	평가 항목	세부 평가내용
㉕ 안전보건성과 (Safety&Health Performance) • 3개 항목	40	D.1. 안전보건경영 핵심 성과측정	1. 안전보건관리 목표 및 실행과제에 대한 성과측정 2. 안전보건활동 성과측정 결과에 대한 근본원인 파악, 개선대책 수립 및 환류
	80	D.2. 안전문화 확산	1.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계획 및 활동 참여·전개·지원 2. 주요사업·사망사고예방 등과 연계한 근로자·이해관계자·대국민 안전문화 확산 사례
	80	D.3. 사망사고 감소 성과	1. 기관의 직영사업소·발주현장·수급업체 근로자의 사망사고 감소성과

서비스집증형

A 안전보건경영체제

- 공공기관의 최고경영자 안전보건경영 리더십 및 안전보건경영체제 · 역량, 안전투자, 안전관리규정, 안전기본계획 등으로 구성

분 야	배점	평가 항목	세부 평가내용
㉠ 안전보건 경영체제 (Safety&Health Management System) • 5개 항목	80	A.1. 최고경영자의 안전보건경영 리더십	1. 최고경영자의 리더십과 안전경영 실천의지 2. 안전보건경영방침 수립 및 공유 3. 최고경영자의 안전보건활동 참여
	80	A.2. 안전보건경영체제 구축 및 역량	1. 안전관리조직의 구성 및 권한 2. 안전관리조직 역량과 구성원의 전문성 향상 3. 안전경영위원회 및 안전근로협의체[안전관리 중점 기관 해당],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 4. 안전보건경영시스템 구축[안전관리 중점기관]
	40	A.3. 안전보건경영 투자	1. 안전보건 예산 편성 2. 안전보건 예산 집행
	50	A.4. 안전관리 규정 및 절차·지침	1. 안전관리규정의 구성, 제·개정 절차 및 최신화 2. 안전관련 절차서·지침 구성, 제·개정절차 및 최신화
	50	A.5. 안전관리 목표 및 안전기본계획 수립	1. 안전보건방침과 안전기본계획의 목표 및 전략 수립 2. 안전기본계획 구성내용 및 이행수준

㉔ 안전보건관리

- 근로자의 건강 유지·증진, 위험성평가, 교육, 안전보건활동 참여, 비상시 대비, 재해조사, 수급업체 산업재해 예방, 수급업체 인프라 지원 등으로 구성

분 야	배점	평가 항목	세부 평가내용
㉔ 안전보건관리 (Safety&Health Administration) • 8개 항목	30	B.1. 근로자 건강 유지·증진	1. 건강진단 실시·결과·사후관리 2. 작업환경측정 실시계획의 수립, 측정결과 고위험 공정 등의 작업환경개선 3.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조치
	30	B.2. 고객응대 근로자 보호 및 건강 증진활동	1. 고객응대 근로자 보호 2. 근로자 건강증진활동 계획 수립·시행
	40	B.3. 위험성평가	1. 위험성평가 지침·계획 2. 위험성평가 추진 활동 3. 위험성평가 결과 활용
	40	B.4. 안전보건교육·인식·활동참여	1. 연간 안전보건교육 계획 수립·실시·관리 2. 관리자·근로자 등의 안전보건활동 참여 3. 안전보건 신고·제안·포상 제도 운영
	30	B.5. 비상상황 대비·대응 및 재해조사	1. 비상시 대비·대응 지침 및 비상 시나리오 선정·교육·훈련, 관련시설·장비관리 2. 재해(산업재해 및 안전사고) 대응 및 재발 방지를 위한 체계와 이행 3. 아차사고(Near Miss) 발굴 및 개선 노력
	40	B.6. 적격 수급업체 선정 절차 및 수급업체 산업재해 예방 조치	1. 도급 계획의 수립·검토 및 수급업체 선정 시 안전 수준평가 기준·방법 등 2. 도급사업의 산업재해 예방조치 계획·실행
	40	B.7. 수급업체 안전보건교육 등 인프라 지원	1. 관계수급인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지원·실시확인 2. 관계수급인에 대한 위생시설 지원 수준 3. 수급인에 대한 안전보건정보 제공 및 이행 확인

㉔ 안전보건활동

○ 안전보건활동은 작업장분야, 건설공사 발주분야로 구성

㉔-1. 작업장

분 야	배점	평가 항목	세부 평가내용
㉔ 안전보건활동 (Safety&Health Activity) • 13개 항목	【㉔-1. 작업장】		
	20 (40)	C.1.1. 기본 안전보건관리	1. 작업장 통로 확보 및 정리정돈, 적정 조도확보, 출입문 및 비상구 등의 유지·관리 2. 안전·보건표지 부착, 화학물질 경고표지 부착, MSDS 게시 등 관리 3. 작업근로자 개인보호구 지급 및 착용
	30 (60)	C.1.2. 기계·전기 설비 및 건축물 등의 위험방지 조치	1. 기계·기구·설비(전기 포함)에 대한 위험예방조치 2. 추락 및 낙하·붕괴 위험장소의 위험방지조치
	30 (60)	C.1.3. 화재 및 질식 등의 위험방지 조치	1. 인화성 물질 등 화재·폭발 등에 의한 위험방지조치 2. 화학물질 중독 및 질식위험 작업에 대한 안전관리
	20 (40)	C.1.4. 위험작업 및 상황 안전관리	1. 주요 고위험 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제, 작업 중지요청제 운영 2. 검사·시험 등의 외부 출장 업무 중의 사고예방조치

※ 괄호 안 배점은 건설공사 발주현장 지표 미적용 기관의 배점

㉔-2. 건설공사 발주현장

분 야	배점	평가 항목	세부 평가내용
㉔ 안전보건활동 (Safety&Health Activity) • 13개 항목	【㉔-2. 건설공사 발주현장】		
	10	C.2.1. 계획단계의 발주자 안전보건활동	1. 중점관리 유해·위험요인 및 위험성 감소대책 발굴수준 2. 기본안전보건대장 내용의 적정성 및 관리
	10	C.2.2. 설계단계의 발주자 안전보건활동	1. 설계자의 위험성평가 지원·검토 및 설계반영 수준 2. 설계안전보건대장 내용의 적정성 및 관리
	10	C.2.3. 시공단계의 발주자 안전보건활동	1. 시공자의 설계안전보건대장 이행계획 지원·검토 및 확인 수준 2. 공사안전보건대장 내용의 적정성 및 관리
	20	C.2.4. 안전보건조정자 활동 및 조치	1. 안전보건조정자 배치, 업무 계획 및 수행 체계 2. 안전보건조정자 활동 및 결과 조치
	35	C.2.5. 발주자의 시공사 안전보건활동 관리	1. 발주자 안전보건관리 업무체계 및 안전보건역량강화 2. 시공자의 위험성평가에 따른 발주자의 이행 점검 및 조치 3. 건설공사 발주현장의 안전보건조치 수준
15	C.2.6. 건설공사 발주현장 안전보건환경 조성	1. 공법변경, 공사기간 단축 및 연장, 설계변경 요청 시 처리 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	

㉕ 안전보건성과[공통]

- 안전보건성과는 안전보건경영 핵심 성과측정 및 안전문화 확산, 사망사고 감소성적으로 구성

분 야	배점	평가 항목	세부 평가내용
㉕ 안전보건성과 (Safety&Health Performance) • 3개 항목	50	D.1. 안전보건경영 핵심 성과측정	1. 안전보건방침과 목표 및 실행과제에 대한 성과측정 2. 안전보건활동 성과측정 결과에 대한 근본원인 파악, 개선대책 수립 및 환류
	100	D.2. 안전문화 확산	1.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계획 및 활동 참여·전개·지원 2. 주요사업·사망사고예방 등과 연계한 근로자·이해관계자·대국민 안전문화 확산 사례
	100	D.3. 사망사고 감소 성과	1. 기관의 직영사업소·발주현장·수급업체 근로자의 사망사고 감소성과

참고 2 | 평가지표 유형 분류 기준 및 유형별 기관 현황

1 | 평가지표 유형 분류 기준

- (유형1) 기간산업형: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내지 제 6조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 중 다음의 사업과 업무를 주로 수행 하며, 사고발생 위험이 다소 높은 기관
 - ① 사회기반시설(SOC) 관련 건설관리 기관
 - ② 항공·항만·철도·도로 등 관련 기반시설 유지·운영
 - ③ 석유·전기·가스·난방 등 유·무형의 공공재화의 생산·공급
 - ④ 기타 정부부처에서 요청하는 공공기관 등
- (유형2) 서비스집중형: 금융, 보험, 보증 등의 행정서비스, 위락·공원시설관리서비스 및 자격·검정·검사·감독·시험 등 기술서비스 중심 업무를 수행하는 기간산업형에 해당하지 않은 기관

2 | 지표유형별 기관현황

① 기간산업형: 28개소

구 분		공공기관명
공기업 (26개)	공기업 I (10개)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공기업 II (16개)	대한석탄공사, 부산항만공사, 여수광양항만공사, 울산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주식회사 에스알, (주)한국가스기술공사, 한국남동발전(주), 한국남부발전(주), 한국동서발전(주), 한국서부발전(주), 한국수력원자력(주), 한국조폐공사, 한국중부발전(주), 한전KDN(주), 한전KPS(주)
준정부 기관 (2개)	위탁집행형 (2개)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② 서비스집중형: 152개소

구 분		공공기관명
공기업 (10개)	공기업II (10개)	강원랜드(주), 그랜드코리아레저(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감정원,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마사회,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한국전력기술(주), 해양환경공단
준정부 기관 (90개)	기금관리형 (13개)	공무원연금공단, 국민연금공단, 국민체육진흥공단, 근로복지공단, 기술보증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신용보증기금, 예금보험공사, 중소기업진흥공단,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원자력환경공단,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위탁집행형 (38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립공원공단, 국립생태원, 국민건강보험공단,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도로교통공단, 사회보장정보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우체국금융개발원, 우체국물류지원단, 축산물품질평가원,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고용정보원, 한국관광공사,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국제협력단,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석유관리원, 한국소비자원, 한국승강기안전공단,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연구재단,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한국장학재단,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전력거래소, 한국정보화진흥원,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한국환경공단,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강소형 (39개)	국제방송교류재단,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농림수산물교육문화정보원,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농업기술실용화재단, 독립기념관, 시청자미디어재단, 아시아문화원,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재단법인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창업진흥원, 한국건강증진개발원, 한국과학창의재단, 한국광해관리공단,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기상산업기술원,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한국디자인진흥원,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보육진흥원, 한국산림복지진흥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소방산업기술원, 한국수산자원공단,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한국연론진흥재단,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한국우편사업진흥원, 한국임업진흥원, 한국재정정보원,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특허전략개발원, 한국해양수산연수원,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기타 공공 기관 (52개)	연구실 (38개소)	(필수) 국방과학연구소,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과학기술원,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한국전기연구원, 국가핵융합연구소, 세계김치연구소, 안전성평가연구소, 울산과학기술원, 한국뇌연구원, 한국세라믹기술원,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한국한의학연구원 (추가 가능) 기초과학연구원,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기술교육대학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화학연구원, 광주과학기술원, 극지연구소, 나노종합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재료연구소,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기계연구원, 한국나노기술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식품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천문연구원,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전시 및 관람시설 (9개소)	태권도진흥재단, (재)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국립광주과학관,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국립대구과학관, 국립부산과학관, 국립해양박물관, 국립해양생물자원관, 예술의전당
	안전관리 중점기관 (5개소)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중소기업유통센터, 중소기업은행, 코레일유통(주), 한국산업은행

③ 현장작동성평가 대상기관

< 1 > 작업장(지사, 직영사업소)

○ 대상 선정기준

가. 공공기관의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 제5조(안전관리중점기관의 지정 등)에 따른 안전관리중점기관 中

- ① 사회기반시설(SOC) 관련 건설관리, 항공·항만·철도·도로 등 관련 기반시설 유지·운영, 석유·전기·가스·난방 등 유·무형의 공공재화의 생산·공급, 기술서비스 제공과정 등 기관의 주요 사업에서 다소 위험도가 높은 작업장 보유 기관
- ② 다수의 국민·외부고객(민원인 등)이 이용하는 교육장, 관람장, 경기장, 체육관, 대합실 등 대국민 이용시설을 운영·관리하는 기관
- ③ 기관의 주요 사업을 위해 도급, 건설발주 등의 수급인을 대상으로 안전보건조치 의무가 있는 기관
- ④ 사고부상자, 사망자 발생기관, 기타 사회적 이슈 발생 및 우려기관 등

나. 안전활동 수준평가 및 안전등급제 주관부처에서 관리 필요성을 인정하는 기관 등

※ 참고자료: 공공기관 업무특성 조사 및 기초현황 조사

○ 대상기관: 63개소

구 분		공공기관명
공기업 (31개)	공기업 I (10개)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공기업 II (21개)	강원랜드(주), 그랜드코리아레저(주), 대한석탄공사, 부산항만공사, 여수광양항만공사, 울산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주)한국가스기술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남동발전(주), 한국남부발전(주), 한국동서발전(주), 한국마사회,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한국서부발전(주), 한국수력원자력(주), 한국조폐공사, 한국중부발전(주), 한전KPS(주), 해양환경공단
준정부 기관 (31개)	기금관리형 (3개)	국민체육진흥공단, 근로복지공단,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위탁집행형 (20개)	국립공원공단, 국립생태원, 도로교통공단, 우체국물류지원단,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관광공사,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한국석유관리원, 한국승강기안전공단,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한국환경공단
	강소형 (8개)	시청자미디어재단, 재단법인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한국광해관리공단, 한국산림복지진흥원, 한국소방산업기술원, 한국수산자원공단,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한국해양수산연수원
기타공공기관 (1개)		코레일유통(주)

< 2 > 건설공사 발주현장

○ 대상 선정기준

- 총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으로 공사가 현재 진행 중인 현장

* 총 공사금액: 하나의 건설공사를 완성하기 위하여 발주한 공사금액의 합계가 50억원 이상인 경우로, 개별 공사금액을 의미하지 않음.

※ 공공기관 업무특성 및 기초 현황 조사결과(20.6월) 및 근로복지공단 산재가입 현황을 토대로 대상 선정

- ① 공정률: 구조물 공사 위주로 공정이 진행되는 현장(공정률 60% 이내)
- ② 공사종류: 사망사고가 다발하는 작업을 보유한 건설공사 현장
(냉동·냉장창고, PC 및 철골, 작업발판 일체형거푸집, 층고 6m이상 거푸집 동바리, 타워크레인 및 항타·항발기, 2m 이상 굴착, 밀폐공간 작업 등)
- ③ 공사기간: 잔여 공사기간이 여유가 있는 현장(평가일 기준)
- ④ 기타: 사회적 이슈 발생 또는 우려가 있는 현장(시공사)
- ⑤ 안전활동 수준평가 및 안전등급제 주관부처에서 관리 필요성을 인정하는 현장 등

※ 참고자료: 공공기관 업무특성 조사 및 기초 현황 조사

○ 대상기관: 35개소

구 분		공공기관명
공기업 (18개)	공기업 I (8개)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공기업 II (10개)	부산항만공사, 여수광양항만공사, 울산항만공사, 한국남동발전(주), 한국남부발전(주), 한국동서발전(주), 한국마사회, 한국수력원자력(주), 한국조폐공사, 한국중부발전(주)
준정부 기관 (15개)	기금관리형 (4개)	공무원연금공단, 국민체육진흥공단, 한국원자력환경공단, 한국자산관리공사
	위탁집행형 (9개)	국립생태원,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환경공단
	강소형 (2개)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한국광해관리공단
기타공공기관 (2개)		국방과학연구소, 한국항공우주연구원

